

#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085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5. 28.  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## 1. 제안이유

어려운 한자어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한자어를 사용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 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어려운 한자어 순화

### 1) 망실 → 분실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51조, 제58조, 제77조, 제78조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 제7조, 제8조, 제9조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, 제17조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

### 2) 잔임기간 → 남은 임기

- 「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」 제2조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
- 「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」 제4조

### 3) 마멸되다 → 닳아 없어지다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」 제6조, 제9조, 제10조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국어기본법」 제4조제1항
- 2)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조례 소관 부서와 합의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생략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4호(단순한 표현·자구를 변경하는 경우)

2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
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
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
6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(여성가족과)

##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**제1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의 개정)**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2호 중 “망실”을 “분실”로 한다.

제58조 중 “망실”을 “분실”로 한다.

제77조의 제목 “(물품의 망실·훼손보고)”를 “(물품의 분실·훼손보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망실·훼손”을 “분실·훼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망실·훼손하였”을 “분실·훼손하였”으로 한다.

제78조제1항제1호 중 “망실하였”을 “분실하였”으로 한다.

**제2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훼손·망실된”을 각각 “훼손·분실된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5호 중 “훼손·망실”을 “훼손·분실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훼손·망실되었거나 훼손·망실”을 “훼손·분실되었거나 훼손·분실”로 한다.

**제3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파손·망실”을 “파손·분실”로 한다.

**제4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망실”을 각각 “분실”로 한다.

제17조제4항 및 제5항 중 “망실”을 각각 “분실”로 한다.

**제5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본문 중 “파손·망실하는”을 “파손·분실하는”으로 한다.

**제6조(「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회의회조례」의 개정)** 「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

위원회의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단서 중 “잔임기간으”를 “남은 임기”로 한다.

**제7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**

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금천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

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단서 중 “잔임 기간으” 를 “남은 임기” 로 한다.

**제8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잔임 기간으” 를 “남은 임기” 로 한다.

**제9조(「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」의 개정)**

「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후단 중 “잔임기간으” 를 “남은 임기” 로 한다.

**제10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」의 개정)**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」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마멸되거” 를 “닿아 없어지거” 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마멸되거” 를 “닿아 없어지거” 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마멸되는” 을 “닿아 없어지는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**신 · 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사용책임)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	제51조(사용책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	2. ----- <u>분실</u> -----
3.·4. (생 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제58조(변상조치)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(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)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.	제58조(변상조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분실</u> ----- -----
제77조(물품의 망실·훼손보고) ① 주관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·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제77조(물품의 <u>분실·훼손</u> 보고) ① ----- ----- <u>분실</u> ----- ----- <u>·훼손</u> ----- ----- 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

<p>(생략)</p> <p>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·망실되었거나 훼손·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 <u>훼손·분실</u>되었거나 <u>훼손·분실</u>-----  -----  -----.</p>
--	---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사용자의 책임) 사용자가 사용도중에 시설물을 <u>파손·망실</u> 등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사용자의 책임) -----  ----- <u>파손·분실</u> -----  <u>실</u> -----  -----.</p>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도서관자료의 변상) ① 이 용자는 본인의 과실로 도서관자 료를 <u>망실</u> 또는 <u>훼손</u> 등을 하였 을 경우 같은 도서관자료 또는 해당 도서관자료에 상응하는 금 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	제15조(도서관자료의 변상) ① -- ----- --- <u>분실</u>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관장은 천재지변·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<u>망                  실</u> 또는 <u>훼손</u> 등이 되었다고 인 정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 을 면제할 수 있다.	③ ----- <u>분                  실</u> ----- ----- -----.
제17조(부속시설의 사용) ① ~ ③ (생 략)	제17조(부속시설의 사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대관사용자는 부속시설을 파 손하거나 시설에 속한 비품을 <u>망실</u> 또는 <u>훼손</u> 등을 하였을 경 우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<u>분실</u> ----- -----.
⑤ 관장은 천재지변·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 속시설이 <u>망실</u> 또는 <u>훼손</u> 등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.	⑤ ----- ----- --- <u>분실</u> -----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 
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변상책임) 수탁자 또는 사 용자는 관리 및 사용 중에 자기 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물 을 <u>파손·망실하는</u> 등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원 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·재해 또는 이 에 준하는 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1조(변상책임) ----- ----- --- <u>파손·분실하는</u> -----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회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협회의의 구성) ① (생 략) 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임기간</u> 로 한  ③·④ (생 략)	제2조(협회의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<u>남은 임기</u> ----- -----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 
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
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 (생 략)  ②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 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<u>잔임 기간</u> 으로 한다.	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<u>남은 임기</u> -----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 일부개정조례안  
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생략) ⑤ 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⑥ (생략)	제8조(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남은 임기-----. ⑥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 
 일부개정조례안  
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(생략) ②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	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남은 임기-----.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공인의 재료) 공인의 재료는 쉽게 <u>마멸되거나</u>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	제6조(공인의 재료) ----- ----- <u>닿아 없어지거</u> ----- ----- --.
제9조(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) ①공인이 분실 또는 <u>마멸되거나</u>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8조에 따른 교부기관에 재교부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략)	제9조(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) ①----- <u>닿아 없어지</u> <u>거</u> ----- ----- ----- 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공인대장) ① (생략)  ②공인대장(전자이미지공인대장 포함)은 훼손, <u>마멸되는</u>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.	제10조(공인대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<u>닿아 없어지는</u> ----- -----.

**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 
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 
 일부개정조례안  
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해당사항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  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.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송정민
연 락 처	2627 - 1872

## 관계법령

### □ 국어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
제4조(공문서의 종류) 공문서(이하 “문서”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법규문서: 헌법·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·조례·규칙(이하 “법령”이라 한다) 등에 관한 문서
2. 지시문서: 훈령·지시·예규·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
3. 공고문서: 고시·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
4. 비치문서: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, 카드 등의 문서
5. 민원문서: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, 인가,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
6. 일반문서: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

제7조(문서 작성의 일반원칙) ① 문서는 「국어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,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.

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.